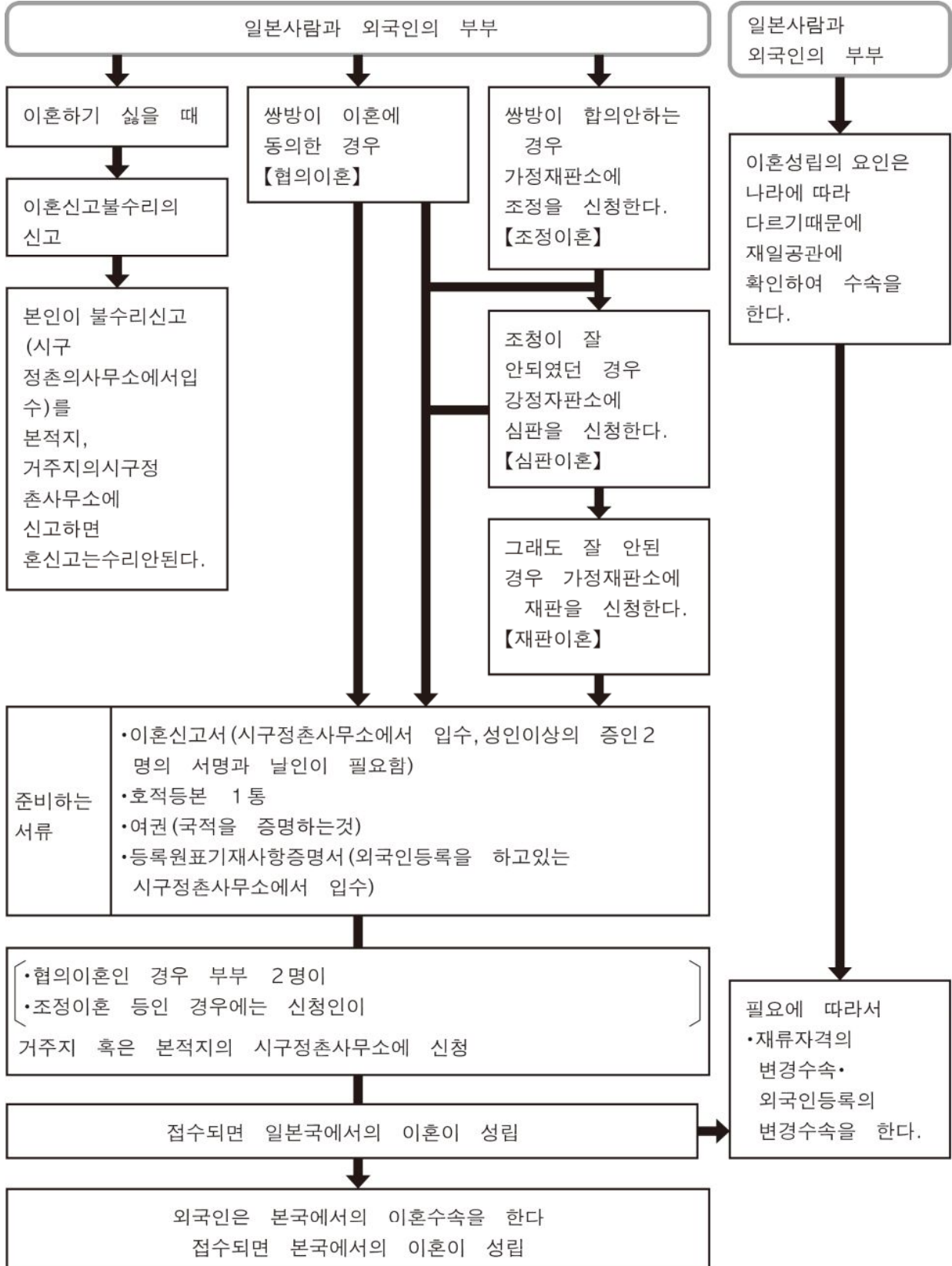


## IV-4 이혼

국제결혼인 경우의 이혼수속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속하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귀하의 본국에서는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수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이혼할 때

부부의 일방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며 부부쌍방이 이혼할 것을 동의 하면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립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이혼」, 가정재판소가 관여하여 성립되는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수속을 하고 본국의 이혼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도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수속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 이혼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속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본국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5 88 페이지)

## 2. 이혼하기 싫은 경우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인배우자의 본적지, 혹은 거주지의 시구정촌사무소앞으로 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해놓으면 당신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이나 재판수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 제도는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이혼후의 재류자격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끼리 혼인하여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재류자격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에 재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상담창구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부록Ⅸ-2 71 페이지) 까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 4.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나 거주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의 외국인등록창구 (부록Ⅸ-1 62 페이지) 에도 신청이 필요합니다.